■ 外權列傳1

母 權良德의 아들, 증산교의 교조 姜一淳(甑山) 〈1〉

■ 권오철 기자 정리

어머니가 권씨라면 半은 權門이다. 앞으로 외권(外權)씨라 칭하고, 부인이 권씨인 사위들도 이른바 서권(壻權)씨라 하고 종친회 모임에도 나오도록 하면 권문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지금은 어머니와 아내의 집안이 사실상 자신의 집안이나 다름없는 시대이니 말이다.

조선시대 인물을 보면 언뜻 이홍휘(단종), 서거정, 이율곡(庶母), 임형수, 이원규, 이익, 강일순(증산) 등의 인물의 어머니가 권씨이다. 물론 이율곡의 모친은 신사임당이고 다만 그 서모가 권씨이고 그 평가도 별로이지만 이율곡은 禮를 다 하여 섬겼다.

이중에 강일순(甑山 姜一淳 1971-1909)을 먼저 소개하고자 함은 그의 어머니 권양덕(權良德 1850-?)이 조선 道敎의 비조 청하(靑霞) 권극중(權克中 1585-1659)의 9대손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단가(丹家)의 집안이다. 이 조선도교의 맥은 을사5적 권중현의 조카 봉우 권태훈(權泰勳)옹의 丹學으로 까지 내려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權翁은 소설 '丹'의 주인공이고 그가 기부한 가옥은 대종회의 귀한 재산으로 남아 족친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권극중은 전라도 고부 출신으로 시문이 뛰어나서 왕발(王勃: 당나라 시인)에 버금 가는 사람이라 칭송이 자자하였다. 조선5대 시인으로 유명한 석주 권필(權韠, 1569-1612)도 극찬한바 있다. 진사시에 합격하고 태학까지 다녔으나 27세에 영창대군 사건을 목도하고 또 스승의 죽음을 보고 모든 걸 접고 '국모가 없고 강상이 무너졌는데 선비의 입신이 다 무엇이냐?'라고 한탄하고 낙향한다. 그리고 '참동계주해'를 지으니 곧 조선 도교의 개조가 되기에 이른다. 단학사상에 관한 권극중의 업적을 살펴보면 단학은 불교와 성리학을 융화시켜 유불선(儒佛仙) 삼교일치(三敎一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한다.

권극중이 '주해'에서 설명한 것은 독특한 환단(還丹)의 원리와 실천 과정을 구명하는데 있다. 환단이란 도교 내단사상에서 丹을 완성하는 실천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파에 따라 서로 다른 이론을 수립하였다.

권극중의 내단사상은 내단학파 중에서도 성명쌍수(性命雙修)를 주장하고, 그 중에서도 '선수명(先修命), 후수성(後修性)', 즉 육체적인 수련을 먼저 이룬 후에 정신적인 수련을 완성함으로써 궁극적인 선인(仙人)의 경계를 추구하는 남종(南宗)의 종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권극중의 환단(還丹) 원리의 독특함은 그가 단순히 기존 남종 내단학(內丹學)의 환단 사상을 답습하지 않고 태극, 선천일기, 음양, 오행 등 성리학적 세계관을 내단학과 결합하여 독특한 환단의 원리를 수립한데에 있다.

그의 환단의 이론 구조는 후천의 음양형기(形氣)가 선천일기로 환원되어 태극에 화합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환단이란 곧 오행생극의 과일을 피해 중정을 추구하는 것임을 밝히고, 이어서 음양오행의 중정은 음양의 상반(相反)과 상제(相制)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짐을 밝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정기신(精氣神)을 일기삼원(一氣三元)의 구조로 해석하고, 끝으로 동류상감론과 채취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그의 사상이 대대로 집안으로 내려와 9세손 권양덕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이것이 그의 아들 증산교주 강일순에게 감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 본관은 晋州 자는 사옥(士玉), 1871년 11월 1일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에서 가난한 선비인 아버지 홍주(興周)와 어머니 권씨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선조들은 이조참의와 도승지 등의 벼슬을 지냈던 것으로 보아 몰락 양반의 자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태어난 손바래기 마을 뒷산 시루봉(甑山) 너머는 동학농민군이 크게 이긴 황토현(黃土峴)이고, 그의 어머니 고향인 정읍군 이평면 두지리는 동학농민군이 집결해 고부봉기를 준비한 말목장터였다.

'대순전경'에 의하면 친정집(全羅道 古阜郡 酋內面 書山里)으로 근친을 간 어머니 권씨의 꿈에 갑자기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 불덩어리가 내려와서 몸을 덮고 하늘과 땅이 밝아졌고 그로부터 13개월 만에 그를 낳았다고 한다. 출산 때에도 그의 아버지의 꿈에 두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간호하는 것을 비몽사몽간에 보았는데 이상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밝은 기운이 집을 둘러 하늘로 뻗쳐올라 7일간 계속 되었다고 한다. 이조참의, 도승지 등 벼슬을 했던 그의 집안은 몰락한 양반의 후예다. 가난으로 글공부가 힘들었던 그는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기도 했다.

동학(東學) 교도가 되었으나 동학이 농민혁명(東學亂?)을 일으켰을 때는 무력사용에 반대했다. 난이 끝난 후 피폐한 민생을 구제할 뜻을 품고 불교, 유교, 도교, 음양오행(讖緯) 등을 파고들어 연구했다. 김제 모악산의 대원사(大院寺)에 들어가 수도와 공부를 계속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한다.

증산 강일순

39세의 나이로 요절한 그의 가르침은 그의 호를 따라 증산교가 되었고 후에 제자들과 그의 부인에 의해 여러 분파가 생겨나 보천교, 미륵불교, 증산대도교, 제화교, 태을교, 동화교, 순천교 등으로 분파되었다. 오늘날엔 증산교, 태극도, 대순진리회 등이 그의 교리를 이은 종파다.

강증산은 권극중이 공부하던 마을, 서산리(書山里)에서 태어났다. 권극중의 사우(祠宇)가 있었던 곳은 마을 뒤편으로 솔밭 언덕 숲속에 비석 하나로 남아 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사우는 없어지고 후대에 기념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산사유허비(書山祠遺墟碑)를 세웠다. 서산사(書山祠)는 권극중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한 곳이다.

비석 옆에는 서산사가 시작될 무렵 심은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배롱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듯 서있다. 서산리는 한때 권극중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후 방에 '산더미 같이 책을 쌓아놓고 공부를 했다'고 해서 '서산(書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 유래를 보면, 서산마을은 '책 서(書)'의 서산(書山)이라 불리기 이전에는 '쥐 서(鼠)'의 서산(鼠山)이었다고 한다. '쥐 서(鼠)'라고 하면 쥐, 좀도둑, 간신배, 근심, 걱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왜 좋지 않은 뜻을 마을지명으로 했는가하는 점을 궁금한데 그 이유는 권양덕의 가문인 안동권씨 집안에서 세운 비문에 노서하전형(老鼠下田形)이란 글이 있으니, 이는 마을의 지형이 노서하전형(老鼠下田形)으로 '늙은 쥐가 밭으로 내려오는 형상'의 명당이 있다 하여 '쥐 서(鼠)'의 서산(鼠山)이라 하였다고 한다. 풍수에 보면 '노서하전형'에는 볏집을 쌓아놓은 형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서산사' 아래에 '창집'이라 하여 고을의 환곡을 저장하는 사창터(社倉地)가 있었으니 틀린 말이 아니다.

강증산의 외가집은 사라진지 오래되어 밭이 되었지만 흔적으로 집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집터를 보면 큰집은 아니고 아담한 초가집이었을 것이다. 집 뒤로는 나지막한 능선이 있고 앞으로는 논이 펼쳐져있으며 오른편으로 집들이 늘어서 있다.

이 마을에서는 "후대에 세상을 구원할 큰 인물이 나온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하고, 강증산이 권극중 선생의 외가로 10세손인 것을 보면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다.

(다음호에 계속)

노동법해설 |

못 받은 임금·퇴직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권오일(복야공파 35세 한국정보평가협회 회장)

임금·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며, 만약 빚(채무)가 있는 경우에 재산압류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가정이 파산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행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등에 대해 우선변제 또는 최우선변제제도를 도입 운영 중에 있다.

1. 임금채권우선변제 제도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조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은 최우선 변제 대상

② 질권, 저당권,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국세기본법)

③ 질권, 저당권,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우선변제 대상

⑤ 조세, 공과금

⑥ 기타 채권의 순임

우선변제 재원인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의 총재산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주는 개인은 사업주, 법인은 법인 그 자체(법인 대표자가 아님), 합자회사는 대표이사이다.

사용자의 총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미 적법·타당하게 양도된 재산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우선변제 확보 방법으로는 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민사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해 환가 처분하고 배당지급 받는 순서를 밟게 된다.

만약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민사집행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소송참가를 통해 변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이 민사절차를 통해 강제집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에서는 사전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바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임금·퇴직금 보장제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정범위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 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나,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임금, 퇴직금 청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용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금품의 청구권을 대위(代位) 행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범위의 임금·퇴직금 이라 함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3. 그 밖의 임금채권 보호 방법

①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임금 등은 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 채권에 대하여는 1/2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② 건설근로의 임금보호를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최소한의 근로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는 것으로 압류를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다.

또한,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되고,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된다.

4. 임금·퇴직금의 소멸시효

임금·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예를 들면,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된다.

소멸시효중단 사유는 재판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이 있다.

최고(催告)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재판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획

權氏烈傳 ⑬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

(지난호에 이어)

세명대와 대원과학대가 충북 제천이라는 지역사회에 기여한바는 상당하다고 자부한다. 제천은 교통의 중심지로 석탄산업등 1차 산업이 발전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 들고 있는 마당에 두개의 대학이 제천에 온 것이니 그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1만명의 학생이 시가지 인구 8만에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고 더구나 그 젊음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인구 비중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방학으로 학생들이 빠져 나가면 택시와 음식점 영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까지 온 것이다.

이러다 보니 상호 협조 공생하는 관계가 되어 제천시의 '市誌편찬' 사업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세명대학의 인문대학의 과제로 맡겨지고, 산업분야의 벤처 기업도 市가 연구자금을 대고 그로 인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가 제천에 들어오면 그것이 市의 수입원이 되어주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다.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다르게 자금에 애로가 있으니 우선은 창업센터를 교내에 창립하여 우수한 기술을 사장 시키지 않고 사업화 하도록 해주었다.

또 이들이 멀리가지 않고도 연구와 공부를 할 수있도록 '고위관리자 과정'을 개설하여 제천관내 유지들의 모임을 하도록 하여 학업적 성취외에도 상호 친목과 정보교환의 장을 만듦으로써 상호부조의 시스템이 가동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끔 유명인사 초청강의도 하는 데, 나도 더러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었다.

이유는 내가 보잘 것 없는 환경에서도 이런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 용기를 얻고 또 격려도 되니 그런 것일 것이다 뭐든지 팩트는 감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그럴 것이고 나자신 또한 지난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도 되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학교 부지 확보로 인한, 거주민의 가옥 분묘등을 이전하고 대토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항의하고 소송까지 하는 사태가 있었다.

세명대학교 전경.

예를 들자면, 33평 아파트도 실평수는 25평인 것 처럼, 공유면적이 라는데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잘 설명하여 해결하였다. 게다가 대학 유치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민들에게 더욱 큰 이익을 주었다.

그렇다고 해도 살던 터전이 주던 그 무형의 가치 즉 인간관계, 자연의 혜택은 대학으로 인해 저감되었다고 생각하니 한 편으로 보면 죄송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숙사를 지으니 하숙집 주인들이 항의하였다. 하지만 자식을 객지에 보낸 부모는 관리가 되는 기숙사를 선호하니 그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받아 들이지 않았다.

또 통학 버스를 운용하니 버스회사에서 항의하였다. 그래서 그들과의 면담에서 배차 간격을 늘려 달라고 하자 20대의 버스 수를 그대로 고집하였다.

지금은 100대가 원활이 돌아가는 상태이니 이것도 대학 유치의 잘된 점 중의 하나 일 것이다.

이제는 대학과 시민이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내가 애초에 말한 '시민의 대학'으로서 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投資와 投自의 결합이 아니면 성공 할 수가 없다. 돈도 자신도 같이 던져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물론이고 남은 내 생애까지도 모두 교육에 걸겠다는 자세로 살기로 하고 전국 최다 득표를 한 국회의원을 두번이나 하고도 과감히 교육에 몸을 바치게 된 것이다.